

監查報告書

2015회계연도 (2015년 3월 1일부터)
2016년 2월 29일까지

본 암

1. 대학 감사보고서(교비회계)

학교법인우송학원

우송정보대학

감사보고서

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우송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계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우송학원(우송정보대학)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우송학원(우송정보대학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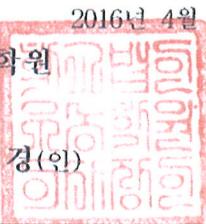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	-	지적사항 없음
2. 학교 관련	-			지적사항 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우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우송정보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계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6년 4월 22일

학교법인우송학원
감사 김재훈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928호)

<p>피감사 기관장</p> <p>2016년 4월 22일</p> <p>학교법인우송학원</p> <p>이사장 김성경(인)</p> 	<p>피감사 기관장</p> <p>2016년 4월 22일</p> <p>우송정보대학</p> <p>총장 정상직(인)</p> 
--	---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우송학원 이사장 구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송정보대학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우송정보대학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6년 4월 22일

학교법인우송학원

감사 김재훈 (인)



회감사자(임회인)

직명 총무과장직대

성명 남우현 (인)

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우송정보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기연도 :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)

*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

피감사기관장 우송정보대학 총장 정상직 죄인

